산재보험 60주년

보험료신고 안내 동영상

건설업·벌목업
2024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안내

신고·납부기한: 2024. 4. 1.(월)

CONTENTS

한 눈에 보는 보험료 신고·납부 03

01 보험료 신고하기 04

가. 전자신고
나. 서면신고

02 보수총액 산정 요령 17

03 보험료신고서 제출하기 22

04 보험료 납부하기 23

근로복지공단

01 근로복지공단 공식 앱 설치

1. 휴대폰 카메라를 켜신 후 좌측의 QR코드를 스캔
2. 연결된 URL 링크를 클릭
3. 설치 페이지로 이동 터치
4. 설치

02 모바일사진보내기로 보험료신고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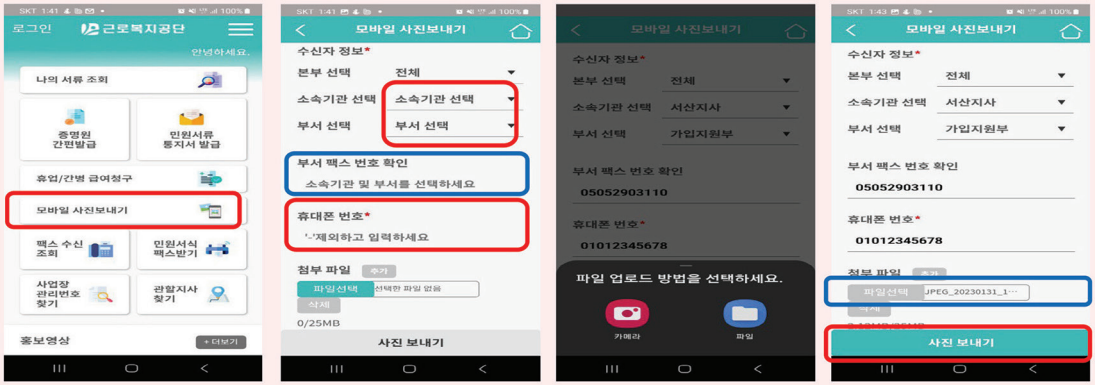

1. 별도의 로그인 없이 "모바일 사진보내기" 클릭
2. "소속기관 선택"을 클릭하여 해당 지사 선택
3. "부서 선택"을 선택하여 가입지원부 또는 가입지원1부(가입지원2부) 선택 (부서팩스번호 자동 표시)
4. 발신자 휴대번호 입력
5. "파일선택" 클릭
6. 파일 업로드방식 "카메라" 선택 클릭
7. 보험료신고서 사진촬영 후 확인
8. 파일선택 입력 확인 후 "사진보내기" 클릭

한 눈에 보는 보험료 신고 · 납부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 가능

2023년 확정보험료·2024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하기

전자신고	서면신고
https://total.comwel.or.kr 접속·로그인 후 사용(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동봉된 2024년 보험료 신고서 및 납부서 준비

산정된 2023년 확정보험료 · 2024년 개산보험료 입력 및 기재

임시저장 및 접수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지사)를 확인하여 FAX/MO/우편/방문 신고하기
납부서 발행	동봉된 납부서에 납부금액 기재하기

2024. 4. 1.(월)까지 시중은행(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25p 보험료 납부방법 참조)

※ 2024. 4. 1.(월) 경과 후 신고 · 납부하는 사업장은 **확정 · 개산 보험료의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추가 납부 금액의 10%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2024. 4.1.(월)까지 반드시 신고 ·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미신고 시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근로자 채용 및 공사실적이 없는 등 신고할 보수총액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료 0원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 고객센터(☎1588-0075),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보험료 신고하기

가. 전자신고(https://total.comwel.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간편신고안내(확정 보수총액을 미리 계산 후 사용, 17p 보수총액 산정요령 참조)

① 토탈서비스 접속 (로그인) ➡ ② 자주 찾는 서비스 – 보험료신고서 ➡ ③ 보수총액 입력 ➡ ④ 임시저장 및 접수(인쇄) ➡ ⑤ 납부서 발행

① 토탈서비스 접속 (로그인) ➡ ② 자주 찾는 서비스 – 보험료신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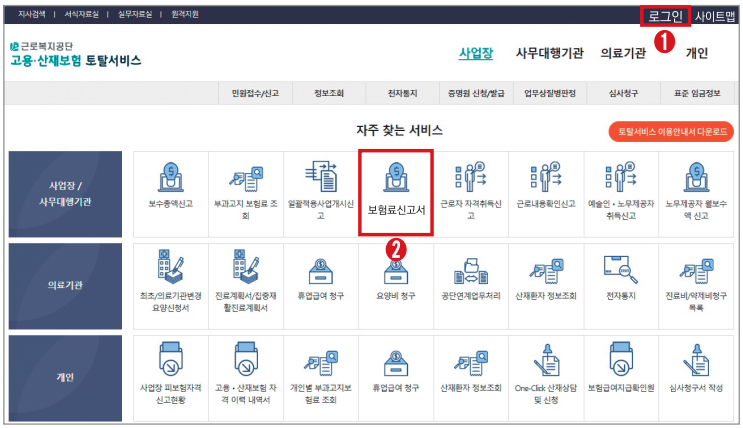

❶ **토탈서비스접속**
포털사이트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검색하여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회원가입절차 폐지)
※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❷ **(자주 찾는 서비스 – 보험료신고서)**
로그인 후 화면 상단에 있는 보험료신고서를 클릭합니다.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 신고 (좌측)

③ 보수총액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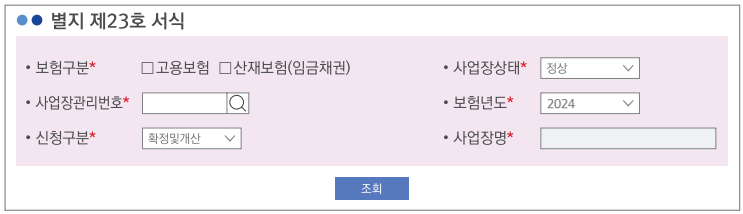

ⓘ 보험구분, 사업장관리번호, 신청구분을 선택하고 아래쪽 조회 버튼을 누르면 보수총액 입력란이 활성화 됩니다.
ⓘ 임시저장자료 삭제는 마이페이지 – 임시저장자료조회에서 조회 후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구분 체크 ➡ 사업장관리번호 선택 ➡ 보험년도 : 2024년 선택 ➡ 신청구분 : 확정 및 개산 ➡ 조회 클릭
- 사업장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항목 입력

확정보험료(보수총액 입력)

확정보험료		산정기간			보수총액	보험요율		확정보험료	신고액	납부액	부족액 초과액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미포함)		2023-01-01	~	2023-12-31			/1000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건설기계	2023-01-01	~	2023-12-31			/1000				
	건설화물	2023-07-01	~	2023-12-31			/1000				
합계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3-01-01	~	2023-12-31			/1000				
	합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2023-01-01	~	2023-12-31			/1000				
	합계										

ⓘ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수총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하도급 노무비율을 사용하는 일괄유기사업장 등 건설업 현장의 경우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2023.1월~12월 : [직영근로자 보수 + 하도급근로자 수(외주공사비*하도급노무비율30%)] 월별인원을 산정하지 못할 경우 : [월보수총액/23년 건설업 평균보수(4,647,165원)]

●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자동산정 초기화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인원	☐ 보수총액	☐ 인원	☐ 보수총액	☐ 인원	☐ 보수총액
1월	명	원	명	원	명	원
2월	명	원	명	원	명	원
3월	명	원	명	원	명	원
4월	명	원	명	원	명	원
5월	명	원	명	원	명	원
6월	명	원	명	원	명	원
7월	명	원	명	원	명	원
8월	명	원	명	원	명	원
9월	명	원	명	원	명	원
10월	명	원	명	원	명	원
11월	명	원	명	원	명	원
12월	명	원	명	원	명	원
합계						
월평균						

➲ 월별인원, 월별보수총액 등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과 인원을 제공합니다. (산재보험은 노무제공자를 포함하여 산정)

➲ 산정하시기 어려운 경우 "**자동산정**"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개산보험료(보수총액 입력, 납부구분(일시납부/분할납부) 선택)

개산보험료		산정기간			보수총액 (보수추정액)	요율		개산보험료	납부구분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석면, 출퇴근재해요율 포함)		2024-01-01	~	2024-12-31			/100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건설기계	2024-01-01	~	2024-12-31			/1000		
	건설화물	2024-01-01	~	2024-12-31			/1000		
합계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4-01-01	~	2024-12-31			/100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합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2024-01-01	~	2024-12-31			/1000		
	합계								

확정보수총액 대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감소(30% 초과) 사유기재	○ 근로자감소 ○ 휴업 ○ 기타

①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수총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④ 임시저장 및 접수(인쇄)

작성된 보험료신고서 내용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접수' 클릭(접수완료)

임시저장 | 접수 | 초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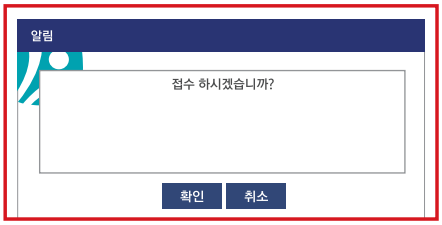

접수내역

접수번호	
민원서류명	
신고일자	
신고인	

납부서발행 | 반환금계좌신청이동 | 이전화면 | 서식인쇄

⑤ 납부서 발행

납부서를 인쇄하여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 회원조합 포함), 우체국에 납부하시거나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부방법은 25p 보험료 납부방법 참조)**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 활용(확정 보수총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결산서 주요 계정을 입력하세요)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 사용순서

① 토탈서비스 접속

② 로그인 후 화면상단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클릭

③ 보험료신고 보수총액 산정계산기 클릭

④ 보험구분 선택 및 사업장관리번호 선택 후 조회

⑤ 결산서 주요계정 입력 펼치기 클릭 후 해당 사항 입력
*17p 보수총액 산정요령 참고

⑥ 입력완료 후 보수총액 계산 클릭

⑦ 화면연계 클릭

※ 기재항목 누락 시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를 통해 산정된 확정보험료와 실제확정보험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산서 입력을 통해 계산된 보수총액을 보험료 신고메뉴로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서면신고

앞면

[별지 제23호 서식]

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는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2024년도 □ 고용 □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 문의 : 1588-0075　※ 전자팩스번호 :　※ 사업장작성자 :　(전화번호 :　)

접수번호	접수일	작성자명 :	(전

㉮ 신고 사업장			
사업장구분 : 일반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000-00-00000-0	공사명(건설공사) :	
사업자명칭 : 근로건설(주)	대표자 : 김복지	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	
전화번호 : 052-000-000	휴대전화 : 010-0000-0000	FAX : 052-000-0000	

㉰ 2023년 확정보험료	구분			산정기간	①보수총액	②보험료율 ( )	③확정보험료액 (①×②)	④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2023-01-01~2023-12-31	세부내용은 17~19p 참조	10.63/1,000		
		노무제공자	건설기계	2023-01-01~2023-12-31		10/1,000		
			건설화물	2023-07-01~2023-12-31		10/1,000		
		계				------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3-01-01~2023-12-31		18/1,000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2023-01-01~2023-12-31		2.5/1,000		
		계				------		

▼ 아래⑧번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이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①번)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

㉱ 2024년 개산보험료 (추정보험료)	구분			산정기간	⑧보수총액	⑨보험료율 ( )	⑩개산보험료액 (⑧×⑨)	⑪분 여
	산재보험	근로자		2024-01-01~2024-12-31	세부내용은 13p 참조	10.63/1,000		[ ]일
		노무제공자	건설기계	2024-01-01~2024-12-31		34.6/1,000		[ ]분
			건설화물	2024-01-01~2024-12-31		34.6/1,000		
		계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4-01-01~2024-12-31		18/1,000		[ ]일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2024-01-01~2024-12-31		2.5/1,000		[ ]분
		계						

※ 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로 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대비 ⑧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감소(30% 초과) 사유
[ ] 근로자 감소 [ ] 휴업
[ ] 그 밖의 사유 :

※ 분할납부는 개산보험료로 한정하며,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분할납부신청서 작성
※ 일시납부를 하는 경우 3% 할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

년　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보험료신고서

(앞 면)

(전화 :)	처리기간 5일

가로 340	
0	E-mail :

개산보험료액		⑥추가납부할액 (③-④)	⑦초과액(⑤-③)	
④신고액	⑤납부액		충당액	반환액

. 보수총액(①번)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⑪분할납부 여부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일시납부 [ ]분할납부
는 경우 뒷면의

이 신고합니다.

(서명 또는 인)

나 2023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인원	보수총액	실업급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인원	보수총액	인원	보수총액
1월	명	원	명	원	명	원
2월	명	원	명	원	명	원
3월	명	원	명	원	명	원
4월	명	원	명	원	명	원
5월	명	원	명	원	명	원
6월	명	원	명	원	명	원
7월	명	원	명	원	명	원
8월	명	원	명	원	명	원
9월	명	원	명	원	명	원
10월	명	원	명	원	명	원
11월	명	원	명	원	명	원
12월	명	원	명	원	명	원
합계	명	원	명	원	명	원
월평균	명	원	명	원	명	원

[ ] 부분에 대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사업장

- 사업장의 일반적인 사항(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확인바랍니다.
  ※ 변동사항이 있을경우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2023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1) 월별 인원, 보수총액은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 및 보수총액 기재(**산재보험은 노무제공자를 포함하여 산정**)

2) 건설업 현장의 경우 월별 보수총액은
   [직영근로자보수+(외주비×하도급공사 노무비율 30%)]/12
   ※ 외주공사비를 월별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월할 적용하여 산정

3) 월별인원을 산정하지 못할 경우
   [월 보수총액 ÷ 2023년 건설업 월평균보수(4,647,165원)]/12

4)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보험료신고서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 2023년 확정보험료

- ①기재(**세부내용은 17~19p 참조**)
- ③, ⑤, ⑦(**세부내용은 11~12p 참조**)

라 2024년 개산보험료

- ⑧기재(**세부내용은 13p 참조**)
- ⑩, ⑪(**세부내용은 13p 참조**)

뒷면

㉮ 건설공사

공사명		
전체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사금액명세	총공사금액	
	당년도 시공예정액	
	익년도 이월예정액	

㉮ 건설공사

- 일괄사업장이 아닌 개별공사로 가입하여 연도이월된 공사의 경우 공사기간 및 금액기재

㉯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 제1기-3.31 제2기-5.15 제3기-8.15 제4기-11.15) ※ 확정보험료 추가납부해야 할 금액(⑥)은 분할납부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구분		개산보험료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원	원	원	원	원
고용 보험	실업급여	원	원	원	원	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원	원	원	원	원
	계	원	원	원	원	원

년 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신청서

- 개산보험료를 분기별로 분할납부 하시는 경우 기재
  (세부내용은 14p 참조)

㉰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납보험료를 충당 신청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구분		납부할 금액	충당 신청액	충당 후 납부액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원	원	원
고용 보험	실업급여	원	원	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원	원	원
	계	원	원	원
반환금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년 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 작년에 납부한 보험료가 많아 올해 보험료에 충당이나 반환액이 있는 경우 기재
  (세부내용은 15p 참조)

㉰ 2023년 확정보험료(건설일괄 예시)

구분				산정기간	①보수총액	②보험료율(일반)요율	③확정보험료액(①×②)	개산보험료액	
								④신고액	⑤납부액
㉰ (2023)년 확정보험료	산재보험	근로자		2023-01-01~2023-12-31	120,000,000	37.64/1,000	4,516,800	4,500,000	4,500,000
		노무제공자	건설기계	2023-01-01~2023-12-31	10,000,000	37/1,000	370,000	0	0
			건설화물	2023-07-01~2023-12-31	10,000,000	37/1,000	370,000	0	
		계			140,000,000	-	5,256,800	4,500,000	4,500,000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3-01-01~2023-12-31	120,000,000	18/1,000	2,160,000	1,200,000	1,200,000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2023-01-01~2023-12-31	120,000,000	2.5/1,000	300,000	250,000	250,000
		계			120,000,000	-	2,460,000	1,450,000	1,450,000

① 보수총액

- 9p ㉯항목 2023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의 합계액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노무제공자의 보수가 있는 사업장은 노무제공자의 보수총액을 구분하여 기재(기준보수로 산정, 18p 참조)

② 보험료율

- 2023년도 산재보험료율
  -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경우 「(개별)요율」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요율」로 구분 표시하였습니다.
  - 산재보험료율에는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1/1,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23년도 임금채권부담금비율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2023년도 임금채권부담금비율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해당사업장 한함)을 산재보험료율을 합산 표시하였으며, 산재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 노무제공자는 임금채권부담금비율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제외

③ 확정보험료액 = ① 보수총액 × ② 보험료율

※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하고 ③번 확정보험료액란에 기재

예시

- 실업급여 확정보험료액 = 122,213,170원×18/1,000=2,199,837원(원단위 이하 절사) ➡2,199,830원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확정보험료액 = 122,213,170원×2.5/1,000=305,532원(원단위 이하 절사) ➡305,530원

※고용보험료(계)=2,199,830원+305,530원=2,505,360원

※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계산 시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합산한 후 원단위 이하 절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별로 원단위 이하 절사한 후 합산

※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계산 시에도 일반 및 노무제공자 별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원단위 이하 절사한 후 합산

확정보험료액과 신고 ·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비교를 통한 ⑥ 추가납부할 액, ⑦ 충당액 및 반환액의 작성 방법(고용보험 · 산재보험 각각 확인 및 작성)

③ 2023년 확정보험료액이 ④ 2023년 개산보험료 신고액보다 많은 경우

- (③-④)금액을 ⑥추가납부할액에 기재하고, 라의 ⑩개산보험료액[일시납부는 3%공제(전자신고시 5천원 추가경감)후의 금액, 분할납부는 제1기 분할납부금액]과 합산 납부합니다.(23p 납부서 작성요령으로 이동하여 작성합니다.)

  ※ ⑤개산보험료 납부액이 ④개산보험료 신고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2023년도 체납보험료입니다.
  체납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보험료 추가납부할액 작성 사례 : 추가납부할액 1,000원(③-④)

① 보수총액	② 보험료율(일반)	③ 확정 보험료액	개산보험료액		⑥추가 납부할액 (③-④)	비고	
			④ 신고액	⑤ 납부액			
1,000,000	10/1,000	10,000	9,000	0	1,000	올바른 산정	(개산보험료 미납분 9,000원은 체납보험료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함)
1,000,000	10/1,000	10,000	9,000	0	10,000	잘못된 산정	(개산보험료 미납분 9,000원은 체납보험료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함)
1,000,000	10/1,000	10,000	9,000	8,000	1,000	올바른 산정	(개산보험료 미납분 1,000원은 체납보험료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함)
1,000,000	10/1,000	10,000	9,000	8,000	2,000	잘못된 산정	(개산보험료 미납분 1,000원은 체납보험료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함)

③ 2023년 확정보험료액이 ⑤ 2023년 개산보험료 납부액보다 적은 경우

- (⑤-③)금액이 ⑩2024년 개산보험료액에서 3% 공제(전자신고 시 5천원 추가경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당액에 그 금액을 기재합니다.

예시

• ③2023년 확정보험료액: 752,000원, ⑤2023년 개산보험료 납부액 : 1,577,320원, ⑩2024년 개산보험료액: 1,152,320원일 경우, 2023년 확정 보험료액과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차액은 825,320원(1,577,320원-752,000원)이 되고, 2024년 납부할 개산보험료액은 3% 공제(34,560원, 1,152,320원×3% 원단위 이하 절사) 후 1,117,760원이 됩니다. 2023년 확정보험료액과 납부한 개산보험료액의 차액인 825,320원이 2024년 납부할 개산보험료 1,117,76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차액 금액을 옆과 같이 작성합니다.

⑦ 초과액(⑤ - ③)	
충당액	반환액
825,320	

'충당액란' 기재후에 보험료신고서 뒷면 사항목과납보험료 충당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⑤-③)금액이 ⑩2024년 개산보험료액에서 3% 공제(전자신고 시 5천원 추가경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산보험료 일시납부를 선택하시고, 3% 공제한 2024년 개산보험료액(전자신고 시 5천원 추가경감)을 충당액에 기재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액에 기재합니다.

㉰ 2024년 개산보험료(건설일괄 예시)

㉰ (2024)년 개산보험료 (추정보험료)	구분			산정기간	⑧보수총액	⑨보험료율	⑩개산보험료액 (⑧×⑨)	⑪분할납부 여부
	산재보험	근로자		2024-01-01~2024-12-31	120,000,000	36.26 / 1,000	4,351,200	[ ] 일시납부 [ ] 분할납부
		노무제공자	건설기계	2024-01-01~2024-12-31	10,000,000	34.6 / 1,000	346,000	
			건설화물	2024-01-01~2024-12-31	10,000,000	34.6 / 1,000	346,000	
		계		-	140,000,000	-	5,043,200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4-01-01~2024-12-31	120,000,000	18 / 1,000	2,160,000	[ ] 일시납부 [ ] 분할납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2024-01-01~2024-12-31	120,000,000	2.5 / 1,000	300,000	
		계		-	120,000,000	-	2,460,000	
※ 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대비 ⑧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감소(30% 초과) 사유 [ ] 근로자 감소 [ ] 휴업 [ ] 그 밖의 사유 :		※ 분할납부는 개산보험료로 한정하며,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뒷면의 ㉱분할납부신청서 작성 ※ 일시납부를 하는 경우 3% 할인		

⑧ 보수총액

- 2024년도 1년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개산보험료 보수총액)입니다.
- ⑧번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이 2023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①번)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는 2023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①번)과 동일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신고 시 산재보험은 전년도 일반 근로자의 보수총액과 노무제공자의 보수총액을 각각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기재
- 70/100 미만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⑧란 아래의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대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감소(30% 초과)" 사유 부분에 그 사유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⑨ 보험료율

- 노무제공자의 보험료율은 임금채권부담금비율과 석면피해구제부담금률이 제외됩니다.

※2023년 확정보험료 신고까지는 사업장요율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4년 개산보험료부터는 직종별요율 적용

⑩ 개산보험료액 = ⑧ 보수총액 × ⑨ 보험료율

※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하고 ⑩번 확정보험료액란에 기재

예시

- ①번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금액이 1,000만원이고 ⑧번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추정액이 800만원일 경우 ⑧번 란은 1,000만원으로 기재(800만원÷1,000만원×100=80% → 확정보수총액 대비 70%~130% 사이)

⑪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선택

- ⑪분할납부 여부에 일시납부를 선택하고, 납부기한 내에 일시납부 하시면 3%공제 혜택(전자신고 시 5천원 추가 경감)이 있습니다(⑪분할납부 여부 항목 [✓] 일시납부에 표시).
- 분할납부를 선택하시면 해당 보험료를 4기로 나누어 납부하실 수 있고(⑪분할납부 여부 항목 [✓] 분할납부에 표시), 보험료 신고서 뒷면의 ㉱항목으로 이동하여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신청서

- ㉣의 ⑪분할납부 여부 항목에서 분할납부를 선택하신 경우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 제1기-3.31 제2기-5.15 제3기-8.15 제4기-11.15) **※ 확정보험료 추가납부할액⑥은 분할납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		000-00-00000-0		사업장명	(주) ○○ 건설	
구분		개산보험료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1,335,780원	333,960원	333,940원	333,940원	333,940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1,955,390원	488,870원	488,840원	488,840원	488,840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305,530원	76,390원	76,380원	76,380원	76,380원
	계	2,260,920원	565,260원	565,220원	565,220원	565,220원

2024년 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주) ○○ 건설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의 ⑩2024년도 개산보험료(고용보험의 경우 각 사업별)를 4등분하되 제2기 이후 금액은 원단위 이하 금액을 절사하여 균등하게 기재하고, 전체금액에서 제2기~제4기 금액 합산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제1기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예시

-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경우 1,955,390원 ÷ 4 = 488,847원이므로 원단위 이하 절사한 488,840원을 위의 서식과 같이 제2기부터 제4기 금액에 기재하고 개산보험료총액 1,955,390원에서 제2기~제4기의 합산금액인 1,466,520원을 뺀 488,870원을 제1기에 기재

※「개산보험료」는 앞면 ⑩번의 개산보험료 전액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확정보험료 과납액을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4회 분할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산보험료 자동이체(계좌, 카드) 납부 유의 사항

▶ 개산보험료 자동이체(계좌, 카드) 납부를 5월 8일까지 신청하시면 제2기 부터 자동이체(계좌,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 **기존 자동이체(계좌, 카드) 신청사업장**도 2024년도 일시납부 보험료 또는 제1기 보험료는 **자동이체(계좌, 카드) 처리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서를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충당이나 반환액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납부할 금액」은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뒷면 ㉯항목 분할납부신청서의 1기 금액(전자신고 시 5천원 경감)을 기재하시고, 일시납부하시는 경우에는 앞면 ⑩번 개산보험료액에서 3% 공제한 금액(전자신고 시 5천원 추가 경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개산보험료 일시납액(3% 공제 후)에 전액 충당되고도 잔여액이 남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환 대상액을 앞면 ⑦번 초과액 란의 반환액에 기재하고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개인사업장은 사업주 개인계좌, 법인사업장은 법인계좌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일시납부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납보험료를 충당 신청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		000-00-00000-0	사업장명	(주) ○○ 건설
구분		납부할 금액	충당 신청액	충당 후 납부액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729,760원	729,760원	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원	원	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원	원	원
	계	원	원	원
반환금 입금 계좌			(근 로)은행	
계좌번호 : 123-45-67890			예금주 : (주) ○○ 건설	

2024년 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주) ○○ 건설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제1기를 충당하고 잔여액이 남을 경우에는 기재란을 수평으로 2등분하여 제2기 보험료액 및 남은 충당가능 금액을 기재

  [이 경우 제1기 보험료는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분할납부 제2기분 납부기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분할납부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납보험료를 충당 신청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		000-00-00000-0	사업장명	(주) ○○ 건설
구분		납부할 금액	충당 신청액	충당 후 납부액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1기) 188,080 원	(1기) 188,080 원	0원
		(2기) 188,080 원	(2기) 16,940 원	172,140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원	원	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원	원	원
	계	원	원	원
반환금 입금 계좌			(근 로)은행	
계좌번호 : 123-45-67890			예금주 : (주) ○○ 건설	

2024년 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주) ○○ 건설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보험료를 충당할 때에는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상호 충당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자영업자 보험료 신고 방법('12.1.21. 이전 승인받은 사업장)

-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확정보험료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2023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2023년 확정보험료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자영업자'의 2024년도 보수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적용되며,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해당되므로 아래와 같이 ㉱2024년 개산보험료(추정보험료)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사업주 서명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2024년도 고용보험 자영업자 보수총액 : 31,200,000원(월 2,600,000원 × 12개월)
-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분할납부하실 수 없으며, 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78,000원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25p 보험료납부방법 참고)
- 보험료신고서 미제출 또는 보험료 미납부로 인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산정기간	⑧보수총액	⑨보험료율 (일반)요율	⑩개산보험료액 (⑧×⑨)	⑪분할납부 여부
㉱ (2024)년 개산보험료 (추정보험료)	산재보험	일반						[ ] 일시납부 [ ] 분할납부
		노무제공자	건설기계					
			건설화물					
		계						
	고용보험	실업급여						[ ] 일시납부 [ ] 분할납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2024-01-01~2024-12-31	31,200,000	2.5/1,000	78,000	
		계		-	-	-		

보험료율·노무비율이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건설업 본사	9/1,000	8/1,000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36/1,000	35/1,000
일반 건설공사 노무비율	27%	27%
하도급 건설공사 노무비율	30%	30%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	14/1,000	14/1,000
임금채권부담금비율	0.6/1,000	0.6/1,000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0.04/1,000	0.06/1,000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1.0/1,000	0.6/1,000
노무제공자 직종별요율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 (시행 : 2023.7.1.)	건설기계: 34/1,000 건설화물: 34/1,000

※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 임금채권부담금비율 ·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은 보험료 신고서상의 산재보험료율에 합산 표시 됩니다.

02 보수총액 산정 요령(전자, 서면)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산정

- ▶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 건설공사(건설 일괄 포함)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외주공사비 등의 경우에는 고시된 하도급 노무비율을 사용
- ▶ 산재보험의 경우 신고대상 노무제공자의 보수가 있으면 분리 산정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를 포함하여 산정

2023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산정 방법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본사 보수총액	사무(내근)직원 보수	사무(내근)직원 보수 +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건설일괄 보수총액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 공사비 × 30%) + 노무제공자 보수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 공사비 × 30%)

주의

※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의 보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다르게 처리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수총액에서 제외되며 65세 이전 고용되어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는 전체보수를 기재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하수급인의 본사 소속 근로자(상용직)는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이므로 하수급인의 본사 고용보험료 산정 보수총액 계산시 해당 보수를 제외합니다. 단, 해외건설공사 파견 근로자는 포함

• 건설일괄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신고대상 공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기공사(발주자 겸 시공자) ② 원도급 공사 ③ 하도급 받은 공사 중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

※ 원수급인으로 '하도급 준 공사(외주공사비) 중 하도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는 제외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내역을 모를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 → 정보조회 → 보험가입정보조회 → 사업개시사업장 현황 조회]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

2023년 확정보험료 신고 시 주의사항 안내

※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건설현장 화물자동차(살수차류, 카고크레인류, 고소작업차류) 운전자가 노무제공자로 적용확대 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 보수총액 신고

◉ 건설기계 노무제공자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건설화물 노무제공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①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중 살수차류 ②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중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③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중 고소작업자동차류)

- **(신고보수액)**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단위 기준보수 2,479,444원(2023년)으로 적용
  ※노무제공자 일 단위 근무 시 해당 월의 일수로 일할계산
- **(신고방법)** 보험료신고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란에 건설기계 · 건설화물 직종을 분리하여 보수총액 기재
  ※단, 2023년 확정 신고 시 건설화물 노무제공자의 산정기간은 2023.7.1.~2023.12.31.임

* 자세한 사항은 우측 상단의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수급과의 계약에 따라 건설현장에 투입된 노무제공자의 보수총액 산정방식

구분		보험가입자	확정 보수총액 산정방식
건설기계·건설화물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원수급인	기준보수로 산정
건설기계·건설화물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산재보험	원수급인	하도급 사업장에 보수액 산정방식에 따라 "하도급 보수액"에 포함 예시) 장비임차료×30% (하도급 노무비율 적용)
	고용보험	건설기계사업주	확정 보수총액 산정 제외 (부과고지 보수총액 신고에 해당)

※ 장비사용료 및 재료비 등 관련 계정에 노무제공자와 건설기계·건설화물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작업비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보수총액 산정 시 주의

재무제표(예시)상 보수총액 산정

•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상 계정과목 반영을 통해 확정 보수총액 산정방법

※ 실제 보수총액 산정 시 예시되지 않은 계정과목에 대해 노무비 또는 하도급공사 누락 여부 확인

2023년 재무제표(예시)

구분	계정과목	계정총액	공제액	보수총액	비고
손익계산서	급여	1,000	100	900	대표이사급여 공제
	상여금	1,000	200	800	대표이사급여 공제
	복리후생비	700	-	700	노무비 해당 금액 기재
	소계	2,700	300	❶ 2,400	

구분	계정과목	계정총액	공제액	보수총액	비고
공사원가명세서 (분양원가 명세서 포함)	급여	1,000		❷ 1,000	
	잡급	1,000		1,000	
	외주공사비	7,000		2,100	외주공사비(외주성 재료비 등) × 하도급 노무비율(2023년 하도급 노무비율: 30%)
	기타(재료비 등)	4,000		1,200	
	용역비	1,000		1,000	노무비 해당 금액 기재
	소계	14,000		❸ 6,300	

계정 총액에서 외주공사비에 해당되는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하여 보수총액 산정

확정 보수총액 산정

① 100% 원도급일 경우 확정보수 총액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본사	2,400(❶)	3,400(❶ + ❷)
건설일괄	6,300(❸)	5,300(❸ - ❷)

② 원·하수급공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확정 보수총액 (원도급 공사비율 60%인 경우)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본사	2,400(❶)	3,000(❶ + [❷×60%])
건설일괄	3,780(❸×60%)	3,180([❸ - ❷]×60%)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공사는 확정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산정

※ 본사 상용직은 원도급 공사비율 미적용 / 현장 상용직은 원도급 공사비율 적용

※ 원도급 공사비율 : 각 현장별로 공사원가가 없어 원도급 공사에서 발행한 노무비와 하도급 공사에서 발생한 노무비 구분이 어려운 경우, 하도급 공사부분이 부당하게 보수총액에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원가명세서상 공사매출(공사수입금)을 기준으로 원도급 공사비율(원도급 공사총액 / 공사매출 총액)을 산정하여 보수총액 산정

유의사항

❶ 확정 보수총액을 잘못 산정한 사례

구분	잘못 산정한 사례
재료비 등 다른계정으로 처리한 외주공사비 노무비	실제 외주공사 또는 노무비를 재료비,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등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여 보수총액에서 누락하고,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와 외주공사비의 30%('23년 하도급노무비율)만 신고
생산제품 설치특례 비해당 공사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적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외주공사비 등을 보수총액 산정시 누락
직업소개소 알선 현장인력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공급받은 현장인력(잡급) 비용을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였더라도 건설일괄사업장(건설현장) 노무비(보수)에 포함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누락
본사소속 현장근무자의 산재보험료	현장소장·기사 등 본사소속 현장 근무자 보수는 건설일괄사업장(건설현장)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건설본사에 포함하여 잘못 신고
본사소속 현장근무자의 고용보험료	현장소장·기사 등 본사소속 현장 근무자 보수는 건설본사에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건설일괄사업장(건설현장)에 포함하여 잘못 신고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하도급 공사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 누락
하자보수공사 직영노무비	본 공사 종료 후 하자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원수급인 직접 사용 근로자 보수(직영노무비)는 원수급인의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누락
미분양 주택의 원가	주택건설업체 중 미분양주택의 원가에 대해서 주택이 분양되는 연도로 원가를 이월하는 경우라도 실제 발생한 연도로 보수를 산입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 누락
공동도급공사	❶ 공동도급공사는 원가배분내역서의 노무비(보수) 및 외주공사비의 30%('23년 하도급노무비율)를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대표사의 매일계산서 비용을 재료비,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고 보수총액 누락
	❷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의 구성원 각 사는 본부 파견직원에 대해서도 각 사의 출자비율만큼 해당공사에 대한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각 사의 본사 보험료로 신고·납부하기로 협약한 후 출자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잘못 신고

※ 국세청 등 외부기관 자료를 토대로 추정 보수액을 산정하여 신고보수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확정정산을 실시

❷ 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금 :**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를 가산금으로 징수
  - 가산금이 3,000원 미만인 경우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천재지변 등에 의한 경우에는 가산금 미징수
- **연체금 :**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연체금 징수
  - 납부기한 후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1,500, 30일이 지난 때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6,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50/1,000을 넘지 못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 유예가 있는 경우와 보험료 체납이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연체금 미징수
- **급여징수금 :** 개산보험료 미납율이 50%를 초과하는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10% 급여징수금 징수
  - 급여징수금의 한도는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
- **과태료 :** 법정기한 내에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❸ 하도급 공사현장의 확정 보수총액 산정방법

- 전체 하도급 공사현장의 실 보수가 모두 파악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 보수 기준으로 보수총액 산정
- 전체 하도급 공사현장 중 일부 하도급 공사현장의 보수만 파악되는 경우에도 전체 하도급 공사금액(외주공사비)에 하도급 공사 노무비율을 곱하여 보수총액 산정

※ 전체 하도급 공사현장의 실 보수가 파악되지 않음에도 일부 하도급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확인된 실 보수'를 적용하고 파악되지 않은 하도급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잘못 산정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❹ 보험료 신고가 어려우시면 보험사무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공단은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사무처리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무·세무 전문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하여 보험사무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절차 |

▶ **온라인**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사무대행업무 ➡ 보험사무위탁신청서 ➡ 사업장 정보 입력, 사무대행 희망기관 선택(검색 클릭) ➡ 접수

▶ **서 면** : 보험사무대행기관 직접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국민소통 ➡ 민원/조회 ➡ 보험사무대행기관 찾기

❺ 확정정산 제도 운영

- 공단에서는 국세청 결산자료 및 건설공사 기성실적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신고보수총액과 상이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정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성실신고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 기한까지 소급정산 실시)

정산대상

- 보험료신고서의 확정보수(임금)총액과 국세청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로 산정한 추정보수(임금)총액이 차이나는 사업장
- 보험료신고서의 확정보수(임금)총액과 사업개시공사금액에 의한 추정보수(임금)총액이 차이나는 사업장
- 그 밖에 보수(임금)총액이 불명확하거나 조사 및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확정정산 대상은 "확정정산 선정위원회"를 통해 전국 단위로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으며, 알선이나 청탁은 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03 보험료신고서 제출하기

- 모든 기재사항을 작성하셨으면, 보험료신고서 서식 내의 관할 지역본부·지사를 확인하여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보험료는 납부서 뒷면 납부방법을 확인하여 시중 은행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4년 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팩스 접수

- 보험료신고서를 팩스로 접수하는 사업주께서는 전자팩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0505를 포함 11자리 번호를 눌러야 정상수신 가능
  - 관할 지역본부(지사) 팩스번호는 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의 '지사찾기'를 통해, 전자팩스 수신여부는 홈페이지의 '전자팩스 수신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4. 4. 1.까지 전자팩스 수신에 대한 자동회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모바일 팩스 : 별도의 팩스가 없더라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보험료 신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팩스로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MO(Mobile Originated) 접수

- MO서비스는 팩스 전송이 어려운 고객이 민원서류 등 이미지를 문자로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반문자 및 동영상은 수신불가)
- 공단 홈페이지 '지사찾기'에서 관할 지역본부(지사)별 MO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우편 접수

- '24.4.1.(월)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04 보험료 납부하기

고용 · 산재보험료 납부서 작성 요령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적어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적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19,200원
② 개산보험료	105,950원
③ 개산 3% 공제액	원
④ 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86,750원

• 3%공제는 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 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1일 이후 성립 사업장 제외)
• 개산보험료 10만원이상전자신고시 경감액: 5,000원
•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50% 초과 체납하고 있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보험사업별로 적어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적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실업급여	6,0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8,000원
	소계	14,000원
② 개산보험료	실업급여	707,6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96,550원
	소계	904,150원
③ 개산 3% 공제액	실업급여	21,22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890원
	소계	27,110원
④ 전자신고 경감		5,000원
납부할 금액 (①+②-③-④)		886,040원

• 3%공제는 개산보험료 법정납기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 개산보험료 10만원이상 전자신고시 경감액: 5,000원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확정보험료>
▸ 2023년 개산보험료 신고액(신고서④번)이 2023년 확정보험료액(신고서③번)보다 적은 경우
• 신고서 앞면 ㉰항목 ⑥번 추가납부할 액을 기재
※ 기존 체납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

<확정충당액>
▸ 2023년 개산보험료 납부액(신고서⑤번)이 2023년 확정보험료액(신고서③번)보다 많은 경우
• 신고서 앞면 ㉰항목 ⑦번 충당액을 (-) 값으로 기재

② 개산보험료

▸ 일시납부인 경우 : 신고서 앞면 ㉱ 항목 ⑩번 개산보험료액을 기재
▸ 분할납부인 경우 : 신고서 뒷면 ㉲ 항목 제1기 보험료액을 기재

③ 개산 3% 공제액

▸ 일시납부인 경우에만 기재
• 신고서 앞면 ㉱ 항목 ⑩번 개산보험료액 × 3%하여 산정된 금액(원단위 이하 절사)
예시) 707,600원 × 0.03 = 21,228 → 21,220원,
196,550원 × 0.03 = 5,896 → 5,890원
※ 분할납부하시는 경우에는 이 란은 기재하지 마세요.

④ 전자신고 경감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보험료 신고를 할 경우 개산보험료에서 5천원을 경감
▸ 전자신고시 보험료 5천원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1.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사업장(고용·산재보험 각각 적용)
2. 보험사무대행기관 위탁사업장
3. 고용보험 자영업자

납부할 금액

•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 납부서상 ① + ② - ③ - ④
• 납부자용 영수증과 수납기관용 영수증서상의 납부할 금액란에 동일 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적어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적어 납부 바랍니다.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19,200원
② 개산보험료	105,950원
③ 개산 3% 공제액	원
④ 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할금액 (① + ② - ③ - ④)	86,750원

• 3% 공제는 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 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 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 개산보험료 10만원이상 전자신고시 경감액 : 5,000원
•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50% 초과 체납하고 있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납부자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 123-45-67890-0

소관 : 고용노동부 / 환경부
회계연도 :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 / 임금채권보장 / 석면피해구제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
사업주명 : △△△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86,750원
납부기한	2024년 4월 1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 1588-0075
자료기준일 :
수납인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 123-45-67890-0

소관 : 고용노동부 / 환경부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 임금채권보장 / 석면피해구제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
사업주명 : △△△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86,750원
납부기한	2024년 4월 1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 1588-0075
자료기준일 :
수납인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보험 사업별로 납부할 징수금 종목(개산, 확정), 3%공제금액, 확정충당액 등을 구분하여 적어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적어 납부 바랍니다.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 또는 확정충당액	실업급여	6,0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8,000원
	소계	14,000원
② 개산보험료	실업급여	707,6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96,550원
	소계	904,150원
③ 개산 3% 공제액	실업급여	21,22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890원
	소계	27,110원
④ 전자신고 경감		5,000원
납부할 금액 (① + ② - ③ - ④)		886,040원

• 3% 공제는 개산보험료 법정납기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 개산보험료 10만원이상 전자신고시 경감액 : 5,000원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납부자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 123-45-67890-0

소관 :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
회계(기금) : 고용보험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
사업주명 : △△△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886,040원
납부기한	2024년 4월 1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 1588-0075
자료기준일 :
수납인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 123-45-67890-0

소관 :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 고용보험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
사업주명 : △△△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886,040원
납부기한	2024년 4월 1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 1588-0075
자료기준일 :
수납인

▶ 납부서 작성 예

확정보험료 추가 납부할 액이 있는 경우

2023년도 확정보험료 추가 납부할 액 10,000원, 2024년도 개산보험료 100,000원(일시 납부), 전자신고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10,000원
② 개산보험료	100,000원
③ 개산 3% 공제액	3,000원
④ 전자신고 경감	5,000원
납부할금액 (① + ② - ③ - ④)	102,000원

2023년도 확정보험료 추가 납부할 액 10,000원, 2024년도 개산보험료 100,000원(4회 분할납부)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10,000원
② 개산보험료	25,000원
③ 개산 3% 공제액	원
④ 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할금액 (① + ② - ③ - ④)	35,000원

확정보험료 초과액(충당액)이 있는 경우

2023년도 확정보험료 초과액(충당 액) 10,000원, 2024년도 개산보험료 100,000원(일시 납부), 전자신고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10,000원
② 개산보험료	100,000원
③ 개산 3% 공제액	3,000원
④ 전자신고 경감	5,000원
납부할금액 (① + ② - ③ - ④)	82,000원

2023년도 확정보험료 초과액(충당 액) 10,000원, 2024년도 개산보험료 100,000원(4회 분할납부)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10,000원
② 개산보험료	25,000원
③ 개산 3% 공제액	원
④ 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할금액 (① + ② - ③ - ④)	15,000원

※ 확정보험료는 3% 공제 또는 분할납부할 수 없으며, 개산보험료도 분할 납부할 경우 3%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부방법 안내

가상계좌 납부

- 납부서 앞면에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금액 입금
  ※ 보험료 납부기간 중 가상 계좌별로 1회만 입금가능
  ※ 가상계좌 납부가능 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 **입금 가능 금액 :** 10원 이상이며, 원단위 금액은 절사
- **입금 가능 시간 :** 납부기간 내 평일 07:00~23:00
  ※ 예약이체, 대량이체 불가

인터넷지로(뱅킹) 납부

- **납부은행 :**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농협,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및 우체국
- **납부방법 :** 「인터넷지로홈페이지(www.giro.or.kr)」 및 「거래은행 홈페이지(공과금 납부 선택)」로 접속하여 납부
-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이용가능 시간 :** 월~금, 00:30~23:30 (단, 일부은행의 경우 365일 07:00~23:30이므로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참조)
- 거래은행별 인터넷 뱅킹 이용 가능 시간은 각 은행 홈페이지 참조

신용카드 납부 안내

- **대상 :** 모든 신용카드
- **납부대행 수수료 :** 보험료 납부금액의 0.8%를 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납부자 부담) / 체크카드 수수료 : 0.5%
- **납부방법**

❶ 인터넷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사회보험 메뉴 ➡ 산재보험료(연납/자진납) 또는 고용보험료(연납/자진납)선택 ➡ 전자납부번호 또는 사업장 관리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 상세내역 클릭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선택) ➡ 납부처리

❷ 공단관할 지역본부 · 지사 방문

모바일 고지· 납부서비스 안내

- **전자고지 대상 :**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의 제2~4기 분할납부서, 자동계좌 이체 출금 안내 문자 발송
- **신청방법 :** (전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서면) 공단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제출
- **납부방법 :** 우리은행 ➡ 우리은행 모바일뱅킹 납부
  우리은행 고객이 아닌 경우 ➡ 금융결제원 뱅크페이 납부
- **납부수수료 :** (뱅크페이 납부 시) 납부액에 따라 110원~1,100원의 수수료를 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납부자 부담)

분할납부 보험료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안내

- **자동이체를 이미 신청한 사업장**
  - '23년도 확정보험료 및 '24년도 개산보험료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제1기 보험료는** 자동이체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 보험료는 2기부터 자동이체 됩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
  - 개산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한 사업장이 제2기부터 자동이체를 적용받으려면 **5월 8일까지 신청** 후 처리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계좌 :** 금융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자동이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고객센터(☎1588-0075)로 유선신청 (유선신청은 사업주, 법인 대표이사 또는 법인 직원 가능)
  - **신용카드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자동이체신청서를 접수

공단 주요정보 및 정책 안내

임금채권 부담금 경감신청서 신청 안내

사업주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거나 퇴직금을 미리 근로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채권 부담금 경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보험 가입, 퇴직연금제도 설정,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 **신청절차**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임채부담금경감 신청
  - 서 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에서 신청서 다운 → 직접 방문 또는 팩스
- **구비서류**: 퇴직보험 등의 가입사실 증명서류(금융사)

2024년도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제도변경 내용 및 지원신청 안내

-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23년) 260만원 미만 → ('24년) 270만원 미만
- **지원제외 소득수준**: 전년도 재산 6억원 이상, 전년도 종합소득 연 4,300만원 이상

지원내용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상용은 일용이력 제외)

지원절차

- 법정신고기한('24.4.1.)내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 '24.5.2.까지 지원신청 →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지원

  ※ 본사 소재지 관할 지사로 제출하거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지원 신청

대리인 선임제도 안내

- 사업주가 공단에 하여야 할 각종 신고 등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1. 개인 대표자: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임직원, 변호사, 노무사
  2. 법인: 임직원, 변호사, 노무사
- **대리의 범위**: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신고, 보수총액(보험료) 신고,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고용정보 및 입·이직정보에 관한 신고 등
- **신청방법**: 사업주가 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

  ※ 사업주 또는 대리인이 아닌 경우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일부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 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안내

23년부터 상시 10인 미만 고용허가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E-9, H-2)도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당연적용 대상

- **대상** :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E-9, H-2)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적용 내용**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당연 적용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외국인 고용보험가입신청서로 별도 제출 필요
- **신고 방법** : - 상용근로자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제출
  - 일용근로자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2023.1.1. 이전부터 근무 중일 경우 2023.1.1.로 취득(근로내용확인)신고

건강손상자녀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산재신청 안내

- **내용** : 임신 중 모(母)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적용** : 법 시행일('23.1.12)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나 ①법 시행일 이전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한 경우, ②법원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③법 시행일 이전 3년 이내 출생했지만 시행일 이후 3년 이내 신청한 경우 소급 인정
- **보험급여** : 자녀의 수급권을 인정하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하되, 장례비는 유족에게 수급권을 인정
- **신청방법** • 관할지사 접수(우편, 팩스),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의료기관 대행
  • 연락처 ☎ 1588-0075,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사업주와 산재근로자를 위한 원직장복귀지원제도 안내

사업소개

작성요령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

- 사업주가 소속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 후 수행하게 될 직무 등을 작성한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면, 산재근로자에게 직장복귀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사업주에게 사업주 지원 사업을 연계·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 **사업주** : 사업주지원제도(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를 연계·안내하고 필요시 직업복귀소견서 발급 등을 지원합니다.
  - **산재근로자** : 직장복귀에 필요한 재활서비스(집중재활치료 작업능력강화훈련 직장동료화합프로그램, 사업주상담, 심리상담 등)를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관할지사 접수(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연락처 : ☎ 1588-0075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비

사업소개

- 직장복귀지원금
  - **지원대상** : 산재장해인(1~12급)을 고용단절없이 원직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
  - **지급요건** :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 지급
    * 제외: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주로서 의무고용률 미초과, 타 법령에 의한 지원금 수령(일부 차액지급 가능)
  - **지원금액/기간**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최대 12개월)

제1급~제3급	제4급~제9급	제10급~제12급
월 80만원(최대 960만원)	월 60만원(최대 720만원)	월 45만원(최대 540만원)

  - **청구/제출서류** : 산재장해인이 원직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 청구서·임금대장 등
  - **신청방법** • 관할지사 접수(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연락처 : ☎ 1588-0075

-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 **지급대상** : 고용단절없이 원직복귀한 산재장해인(1~12급)에게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지급요건** : ①(적응훈련비)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 시작 ②(재활운동비)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 시작 ③적응훈련(재활운동)이 끝난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실비 증명이 불가능한 훈련의 경우에는 사전에 직장적응훈련 신청서 제출
  - **지원금액/기간**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최대 3개월)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월 45만원 (최대 135만원)	월 15만원 (최대 45만원)

  - **청구/제출서류** :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이 끝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 청구서·소요비용 증빙서류 등
  - **신청방법** • 관할지사 접수(우편, 팩스) • 연락처 : ☎ 1588-0075

납품대금 연동제 알아보기

납품대금 연동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위탁기업은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

적용대상 제외

①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② 수·위탁 거래 기간 90일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③ 납품 대금이 1억원 이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④ 수·위탁 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044-204-7905, 7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퇴직연금, 푸른씨앗으로 한번에 해결하세요!

푸른씨앗은 수수료 감면, 사용자부담금 10%(사업주+근로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푸른씨앗이란? 오직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위한 국내 유일 공적 퇴직급여제도

이것만은 꼭! 푸른씨앗 알기

근로자에게 좋은 점

근로자 지원금 : 최대 3년간 약 80만원 퇴직연금 추가 적립
※ '24년 기준 26만 8천원, 단 사업주 지원기간 내에만 지원

수익률 : '23년 연 6.97% 수익률

사업주에게 좋은 점

사업주 지원금 : 3년간 최대 2,412만원 지원
※ 1인당 26만8천원, 최대 30인

수수료 : 4년간 0원

문 의 ☎1661-0075 인터넷에서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을 검색해보세요!

2024년 쉽고, 빠르고, 간편한 Easy-Quick 전자신고

https://total.comwel.or.kr

이벤트

-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는 쉽고, 빠르고, 편리한 토탈서비스로!!
- 5인 미만 사업장 및 최초 전자신고 할 경우 경품 당첨확률 UP!!

1200명 커피 기프티콘 (1만원 상당)

행사기간 [보수총액신고] 2024년 2월 1일(목) ~ 3월 15일(금) / [보험료신고] 2024년 2월 1일(목) ~ 4월 1일(월)

"근로복지공단은 고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청렴 ·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패·공익 신고는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공익침해행위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 신고하기
- 부패·공익신고 상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국민권익위원회 근로복지공단